

FSS/2405-14 :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주석 미기재

- 쟁점 분야: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주석 미기재
- 관련 기준: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
- 결정일 : 2023년
- 회계결산일 : 2021.1.1.~2021.12.31.

1. 회사의 회계처리

식품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A사(이하 ‘회사’) 및 그 종속기업 R사는 계열회사인 S사와 특수관계자 거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.

R사는 특수관계자 S사로부터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제공받았는데 이를 R사의 개별재무제표 주석에만 기재하고, 회사의 연결재무제표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는 누락하였다.

또한 회사는 당기 중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이에 특수관계자 S사가 참여하였으나, 동 내용을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누락하였다.

2.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

회사와 그 종속기업 R사는 계열회사인 S사와 특수관계자거래(유상증자, 제공받은 지급보증)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.

3.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

-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(특수관계자 공시) 문단 18에 따르면, 채무에 대하여 제공받은 보증의 상세내역은 특수관계자 거래에 해당한다.
- ② 또한 동 기준서 문단 21에서 공시하는 특수관계자 거래의 예를 나열하고 있는데, 금융약정에 따른 이전(현금출자를 포함)을 명시하고 있다.

4. 시사점

회사는 특수관계자 거래내역을 주석공시 할 때 지급보증이나 출자거래 등 기타 약정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. 또한 연결재무제표에는 종속기업과 그 특수관계자의 거래내역을 포함하여 공시해야 한다.